

입법예고

국 유 릫 의 경 영 및 관 리 에 관 한
법 률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산림청
(산림정책과)

1. 개정이유

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

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목조 건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가 가능하게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'26. 4. 21. 공포, '26. 10. 22. 시행)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임 조항이 아닌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정정하여 법체계 정합성 제고(안 제31조제1항 개정)

1) (당초) 법 제29조제2항 → (개정안) 법 제29조제1항

나.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 추가(안 제31조제1항제4호 신설, 안 별지제3호서식 개정)

1) 산림분야 연구개발이나 목조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

2)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 서식에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기재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특이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지

2) 입법예고(2026. 7. 23. ~ 2026. 9. 1.)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1조제1항 중 “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제31조제1항제3호 중 “제3호”
를 “제3호 및 제4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)	제31조(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)
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유 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 하여 관계기관장에게 <u>제출하여</u> <u>야</u> 한다.	① ----- <u>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출해야 -----.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상양여: 국유임산물 사용계 획서 1부	3. ----- <u>제3호 및 제4호</u> ----- 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
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	10일	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		
	주소	전화번호			
신청사항	산물 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(公簿) 면적 m ²	채취구역면적 m ²
	종류	수량	본	용도 m ³	
	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	비고

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제주특별자치도지사, 국립수목원장
산림항공본부장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
지방산림청장, 국립산림과학원장

첨부서류	1.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가. 주민의 경우 보호협약을 체결한 주민동의서,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나. 위치도(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)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다.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 1부 2.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가.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양여: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1부 나.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양여: 재해복구계획서 1부 다.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무상양여: 국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	→	무상양여 여부 통지
--------	---	----	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

신청인

처리기관

처리기관

처리기관

* 처리기관: 제주특별자치도, 국립수목원, 산림항공본부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, 지방산림청 또는 국립산림과학원